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월 25일

미래·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년 1월 7일

나. 제안자: 윤유선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2년 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2.1.25.)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윤유선 의원)

#### 가. 제안이유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2) 아동 급식지원의 대상, 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3) 급식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제8조)
- 4)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2조)

5) 단체급식소의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나. 예산조치: 2022년 예산 기편성

다. 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2. 1. 7. ~ 1. 11.) 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허은옥)

가. 제정취지

○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에 기여하고자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규정하였고,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sup>1)</sup>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함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급식지원대상자(안 제2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안 제3조(급식지원 방법)**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에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급식지원 방법(안 제3조)**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 **안 제4조(급식지원 안내) ·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제때에 급식 지원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급식지원 신청 시 아동 또는 보호자 외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공무원도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에서 안 제 12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도록 하였음

•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사항(안 제9조)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3조(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서류를 검사 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의견

- 「아동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35조제4항)

- 이에 따라,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 지침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의거 시행중인 아동급식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7월부터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도봉구, 용산구를 제외한 22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 현재 우리구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수는 1,496명이며, 단체급식소, 꿈나무카드, 도시락 배달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구분	계	단체급식소			꿈나무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 아동센터	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	관외지역 아동센터	일반음식점	편의점	
기관수	<b>4,448</b>	20	1	4	3,797	625	1
이용인원수	<b>1,496</b>	455	20	17	932		72

-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 시행중인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및 지원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 서비스
2.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관련 검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3.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식습관 개선, 영양 교육·관리 서비스
4.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비만 방지, 기초체력 측정, 신체활동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서비스

-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